

## 「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6. 7

2. 개정내용: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상품명: 『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』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(목적) 하나 해외이주·유학 클럽서비스 약관(이하 ‘약관’이라 함)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, 거주 또는 유학(예정)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 이주 유학클럽(Hana Overseas Club)서비스(이하 ‘서비스’)의 제공자인 하나은행(이하 ‘은행’이라 함)과 이용자인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.</p> <p>제 2 조~제 18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19 조 (약관의 변경)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 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. ②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.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④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⑤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 20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21 조 (준용규정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 법령, 외국환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및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</p> <p>&lt;부칙&gt; (기재생략)</p>	<p>상품명: 『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』</p> <p>제 1 조 (목적) 하나 해외이주·유학 클럽서비스 약관(이하 ‘약관’이라 함)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, 거주 또는 유학(예정)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 이주 유학클럽(Hana Overseas Club)서비스(이하 ‘서비스’)의 제공자인 KEB 하나은행(이하 ‘은행’이라 함)과 이용자인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.</p> <p>제 2 조~제 18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19 조 (약관의 변경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</p> <p>제 20 조 (기재생략)</p> <p>제 21 조(준용규정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 법령, 외국환거래 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</p> <p>&lt;부칙&gt; (기재생략)</p>	<p>상품명 변경</p> <p>은행명 수정 하나은행 -&gt; KEB하나은행</p> <p>(약관의 변경) 문구 수정</p> <p>은행명 삭제 (구 하나은행)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비적용